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2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6507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소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5구합6799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13.
판 결 선 고	2017. 1. 10.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별지 2 목록 순번 11번 중 과세호수 542호 취득세, 순번 19번 과세고지일, 순번 21번 중 과세호수 718호의 과세금액 및 과세고지일, 순번 27, 29, 31, 35번의 과세고지일, 순번 40번 중 과세호수 1104호 과세금액, 순번 50, 53번의 과세고지일을 별지 2 목록 해당부분의 기재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2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과세고지일'란 각 해당 일자에 한 같은 목록 '과세금액'란 각 해당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별지 2 목록 순번 11번 중 과세호수 542호 취득세, 순번 19번 과세고지일, 순번 21번 중 과세호수 718호의 과세금액 및 과세고지일, 순번 27, 29, 31, 35번의 과세고지일, 순번 40번 중 과세호수 1104호 과세금액, 순번 50, 53번의 과세고지일을 별지 2 목록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별지 2 목록 중 과세금액과 과세고지일에 일부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상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2

판사 정봉기

판사 조용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2

[별지 1]

원고 목록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2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AA

27. AB

28. AC

29. AD

30. AE

31. AF

32. AG

33. AH

34. AI

35. AJ

36. AK

37. AL

38. AM

39. AN

40. AO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2

41. AP

42. AQ

43. AR

44. AS

45. AT

46. AU

47. AV

48. AW

49. AX

50. AY

51. AZ

52. BA

53. BB

54. BC

55. BD

56. BE

57. BF

58. BG

59. BH

60. BI

61. BJ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2

62. BK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2

[별지 2]

목 록

순번	성명	과세호수	과 세 금 액 (원)				과세고지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합계	
1	B	<삭제 처리>	5,833,600	583,360	291,680	6,708,640	2015. 6. 29.
2	C		5,731,260	573,120	286,560	6,590,940	2015. 6. 29.
			5,731,260	573,120	286,560	6,590,940	2015. 6. 29.
			6,601,180	660,110	330,050	7,591,340	2015. 6. 29.
3	D		5,702,730	570,270	285,130	6,558,130	2015. 6. 29.
4	E		6,710,040	625,400	289,900	7,625,340	2015. 6. 8.
5	F		5,720,510	572,050	286,020	6,578,580	2015. 7. 1.
			5,822,660	582,260	291,130	6,696,050	2015. 7. 1.
6	G		6,017,050	601,700	300,850	6,919,600	2015. 7. 6.
			6,017,050	601,700	300,850	6,919,600	2015. 7. 6.
			6,017,050	601,700	300,850	6,919,600	2015. 7. 6.
7	H		6,031,210	603,120	301,560	6,935,890	2015. 6. 8.
8	I		6,021,300	602,130	301,060	6,924,490	2015. 7. 1.
9	J		5,959,610	595,960	297,980	6,853,550	2015. 6. 29.
10	K		6,536,170	653,610	326,800	7,516,580	2015. 6. 8.
11	L		3,223,080	322,300	161,150	3,706,530	2015. 7. 9.
			2,105,710	210,570		2,316,280	2015. 7. 9.
12	M		3,718,910	371,890	185,940	4,276,740	2015. 6. 8.
13	N		3,718,910	371,890	185,940	4,276,740	2015. 7. 6.
14	O		3,716,280	371,620	185,810	4,273,710	2015. 6. 8.
			3,624,470	362,440		3,986,910	2015. 6. 8.
15	P		3,237,440	323,740	161,870	3,723,050	2015. 8. 9.
16	Q		6,017,950	601,700	300,850	6,919,600	2015. 6. 8.
17	R		3,805,370	380,530	190,260	4,376,160	2015. 6. 29.
18	S		3,241,980	324,190	162,090	3,728,260	2015. 6. 29.
19	T		2,736,910	273,690		3,010,600	2014. 10. 1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2

순번	성명	과세호수	과 세 금 액 (원)				과세고지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합계	
20	U	<삭제 처리>	2,993,660	299,360		3,293,020	2015. 6. 8.
			1,674,420	167,440		1,841,860	2015. 6. 8.
21	V		2,954,050	295,400		3,249,450	2015. 6. 19.
			1,479,110	147,910		1,627,020	2015. 8. 9.
22	W		3,342,500	334,250		3,676,750	2015. 7. 1.
23	X		2,334,040	233,400		2,567,440	2015. 7. 6.
24	Y		1,759,630	175,960		1,935,590	2015. 6. 29.
25	Z		849,690	84,960		934,650	2015. 6. 8.
26	AA		3,485,740	324,770		3,810,510	2015. 7. 1.
			3,675,170	367,510		4,042,680	2015. 7. 1.
27	AB		3,090,010	309,000		3,399,010	2015. 5. 21.
28	AC		3,599,240	335,520		3,934,760	2015. 6. 29.
29	AD		1,820,940	169,690		1,990,630	2015. 7. 1.
30	AE		1,829,120	170,510		1,999,630	2015. 6. 29.
31	AF		3,614,860	361,490		3,976,350	2015. 5. 22.
			1,495,750	149,580		1,645,330	2015. 5. 22.
32	AG		1,556,720	155,670		1,712,390	2015. 6. 29.
33	AH		3,570,280	357,020		3,927,300	2015. 7. 21.
34	AI		4,170,540	388,650		4,559,190	2015. 7. 6.
35	AJ		1,848,610	184,860		2,033,470	2014. 10. 13.
			1,970,130	197,010		2,167,140	2014. 10. 13.
36	AK		2,723,590	253,750		2,977,340	2015. 6. 8.
			3,690,030	343,800		4,033,830	2015. 6. 8.
37	AL		1,967,380	183,330		2,150,710	2015. 7. 9.
			3,460,700	322,470		3,783,170	2015. 7. 9.
38	AM		1,938,420	180,640		2,119,060	2015. 7. 6.
			1,967,790	183,370		2,151,160	2015. 7. 6.
39	A		1,820,520	169,050		1,989,570	2014. 11. 16.
			3,068,410	306,840		3,375,250	2014. 11. 1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2

순번	성명	과세호수	과 세 금 액 (원)				과세고지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합계	
40	AN		3,215,520	321,550		3,537,070	2015. 8. 9.
			2,347,840	234,780		2,582,620	2015. 6. 19.
41	AO		2,990,820	299,080		3,289,900	2015. 6. 8.
42	AP		2,960,320	296,030		3,256,350	2015. 6. 29.
43	AQ		1,730,700	161,270		1,891,970	2015. 7. 9.
44	AR		3,776,960	377,690		4,154,650	2015. 6. 29.
			3,776,960	377,690		4,154,650	2015. 6. 29.
45	AS		3,755,640	375,560		4,131,200	2015. 6. 8.
46	AT		3,674,300	367,430		4,041,730	2015. 6. 8.
47	AU, AW		1,951,180	195,110		2,146,290	2015. 6. 8.
48	AU, AV		2,990,120	299,010		3,289,130	2015. 6. 8.
49	AX		1,979,790	197,970		2,177,760	2015. 5. 27.
50	AY	<삭제	2,301,570	230,150		2,531,720	2015. 5. 21.
51	AZ	처리>	2,179,750	217,970		2,397,720	2015. 6. 8.
52	BA		2,356,620	235,660		2,592,280	2015. 7. 6.
			2,937,350	293,730		3,231,080	2015. 7. 6.
53	BB		1,416,360	141,630		1,557,990	2015. 6. 19.
54	BC		2,990,120	299,010		3,289,130	2015. 6. 8.
55	BD		2,284,920	228,490		2,513,410	2015. 7. 1.
56	BE		1,759,630	175,960		1,935,590	2015. 6. 29.
			1,759,630	175,960		1,935,590	2015. 6. 29.
57	BF		1,175,020	117,500		1,292,520	2015. 6. 29.
58	BG		1,165,910	116,590		1,282,500	2015. 7. 9.
59	BH		3,244,280	324,420		3,568,700	2015. 6. 8.
60	BI		1,711,040	171,100		1,882,140	2015. 6. 29.
61	BJ		784,050	78,400		862,450	2015. 6. 8.
62	BK		1,658,800	165,880		1,824,680	2015. 6. 29.
			1,658,800	165,880		1,824,680	2015. 6. 29.